

위·수탁 운영관리계약서 일반조건

제1조 목 적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주)와이지푸즈(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재단'에게 관리위탁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이하 'DDP'라 한다) 살림터 문화콘텐츠(이하 '위수탁목적물'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 위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수탁운영관리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물의 표시

본 위수탁목적물의 면적 및 위치도는 붙임과 같다.

제3조 위·수탁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하 '위수탁기간'이라 한다)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수탁자'가 위수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아래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계약연장을 요청하고, 이에 '재단'과 '수탁자' 간에 위수탁기간 연장 및 계약조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연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재단'과 서울특별시 사이의 위수탁협약이 갱신되거나 재위수탁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수탁협약의 기간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② '수탁자'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수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문서로 '재단'에 계약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위수탁기간 연장은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④ '수탁자'가 제2항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이 그 연장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수탁자'는 제1항의 본 계약 개시일에 위수탁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수탁운영관리를 시작하여야 하고, 본 계약 만료일까지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위수탁목적물을 점유 개시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재단'에 명도하여야 한다.
- ⑥ 영업준비기간은 당사자 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수탁자'는 영업개시일 10일 전 까지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익료

'수탁자'가 지급해야 할 분기별 수익료는 총 매출액의 12%(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수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재단'이 지정한 아래 은행계좌에 매 분기별(3개월) 수익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별첨 2. 수익료 납부 계좌 기재 참조)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우리은행 1006-801-402253	(재) 서울디자인재단 DDP	임대사업운영

제5조 수익료의 납부

- ① 수익료는 분기 종료일(영업개시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수익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매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단'에 매분기 매출현황 등 영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매출현황 제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비 등의 납부

①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의 운영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제반비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부담하며, '재단'이 고지하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전용면적 관리비 : 위수탁목적물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경비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용면적 관리비 : 위수탁목적물 중 공용면적(279.12㎡)에 대한 월간 관리비(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소모품, 보안, 경비, 청소, 방역, 기타경비 등)를 ㎡당 11,000원(부가가치 포함)으로 계산하여 매월 부과한다.

단, 인건비, 유지관리비용 등의 인상에 따라 '재단'은 해당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때에 '재단'은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수탁자'가 '재단'에 직접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매월 말일 10일 전까지 공문 및 계산서로 청구하며, '수탁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단'의 사정으로 청구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③ 매월관리비는 전월 사용량에 관한 관리비를 의미하며, 매월 말일 10일전 당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청구를 한다.

④ '수탁자'는 위수탁기간 중에 위수탁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위수탁계약의 해제·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 위수탁목적물을 '재단'에 반환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위수탁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시 '재단'과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명도기일 내에서는 관리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7조 수익료, 관리비 등의 연체료

①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익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수

탁자'는 그 연체금액과 그 연체기간 동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가산금과 별도로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 지체 시 가산금 등이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해당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보증금

'수탁자'는 계약의 보증 및 이행을 위하여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재단'에게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금

'수탁자'는 연체료, 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원상회복비, 기타 손해배상채무 등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재단'에게 연간 예정가격(감정평가금액) 100분의 15이상의 지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특별약관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30일(명도일 지정기한 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계약체결로부터 7일 이내 납부 또는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업종 및 운영

- ①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의 운영관리자로서 위수탁 합의서에서 합의한 업종과 제안서에서 제안한 업종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재단'에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

야 하고, '수탁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③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을 '재단'과 협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테넌트를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유치된 테넌트 변경의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유치 및 변경된 테넌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영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테넌트의 계약서 사본(공증증서, 세무서 확정일자 또는 테넌트의 사실확인서 중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2. 테넌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테넌트의 이행각서
- ⑥ '수탁자'가 유치한 테넌트는 위수탁목적물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운영할 경우 '재단'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추가)
- ⑦ '수탁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 유치·변경된 업종을 '재단'의 사전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다. 단, '재단'의 승인을 받고 테넌트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추가)
- ⑧ 위수탁목적물 내·외부에 안내사인 및 광고 미디어, 환경시설물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디자인 심의 등)하여 결정한다.
- ⑨ '수탁자'는 시민만족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 운영, 테넌트 관리 및 매장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연간 운영실적 및 다음연도 연간운영계획 등)을 매년 11월말 까지 '재단'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⑩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 내·외부에 사업제안서 및 우선협상합의서에서 제안한 식음 문화콘텐츠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체험형 공익공간을 설치 또는 운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취급제한 품목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 품목에 해당할지라도 아래 각 호의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 1. DDP 내 질서, 선량한 풍속 및接客환경을 저해하는 품목

2. 공공시설에서 판매행위가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품목

제11조 전대 및 양도 금지

- ①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을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본 계약의 운영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수탁자'는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유치한 테넌트에 의해 위수탁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에게 전대·양도되거나 담보물건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 ① 위수탁목적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이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처리, 기타 설치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는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 '수탁자'가 위수탁목적물에 시설 공사와 이설, 철거를 한 경우 및 안내 사인, 미디어, 환경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재단'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위수탁목적물의 구조적 안전 및 일체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해당 행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수탁자'의 시설물 설치·변경 등의 행위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이와 관련 해당 관청으로부터 '재단'이 과태료 등의 벌과금을 부과받거나 철거 이행강제 지시를 받는 등 '재단'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및 부담을 끼쳤을 경우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그 기간 만료 전 중도에 해재·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라 위수탁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기부채납에 합의한 시설물에 대해서 '재단'은 '수탁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 ⑤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비용 및 위수탁목적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

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재단'에 해당 비용의 상환 내지 시설물의 매수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시설물의 관리

- ①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의 유지·보존·관리 책임을 지며, 위수탁목적물 내 시설물을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이동 또는 변형하지 못한다.
- ②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 및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물, 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 수선과 이에 따른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③ 위수탁목적물과 그 제반 시설물의 고장 내지 멸실, 누수 등에 따라 '수탁자'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수탁자'의 시설 설치 등이 위수탁목적물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거나 구조적 안전 및 일체성, 미관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설치 계획의 변경, 기설치 시설의 철거 등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 및 그 시설과 주변 환경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보건위생에 관한 법령을 지켜야 하며,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물 등 폐기물 일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⑥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에서 종사하는 자의 법정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감염 등으로 DDP 이용객들에게 전염의 확산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격리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수사항

- ①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상도의를 준수하고 관계법령의 면허 및 허가 등의 조건과 위수탁목적물 관리에 관한 본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재단' 및 행정관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과 그 부속시설의 구내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 고용인, 대리인, 수급인, 기타 외부 업체 관계자(이하 '수탁자의 종사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서면경고, 해지 등 '재단'의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1. 인화물질, 위험한 물품 또는 기타 이용시민의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위수탁목적물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위수탁목적물 내로 반입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2. 위수탁목적물 내의 공기 오염, 악취, 소음 등을 유발하여 위수탁목적물의 품위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3. 위수탁목적물 이외의 장소에 전시물 및 상품 등을 진열 및 적재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호객행위 등 이용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4. '재단'이 제공하는 열원 이외에 전열기, 냉동기 등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기기를 '재단'의 승인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공중에 불쾌감을 주거나 '재단'의 서면승인을 얻지 않은 간판, 광고물, 기타 물품을 설치, 게시, 방치하는 행위
 6. '재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재단'이 설치한 구조물, 시설물, 기계류 등을 파괴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행위
 7. '재단'이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위수탁목적물을 임의로 휴업 또는 폐점하는 행위
- ③ 일반 쓰레기는 '수탁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재단'이 지정한 쓰레기 처리장에 집하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이 업무상 필요로 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영업관련 일체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 등의 이용시민 편의를 위하여 이용시민에게 그 불편을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야 하고, 위수탁목적물과 관련된 민원과 그 손해 등은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이에 '수탁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재단'은 '수탁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재단'이 직접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의 종사자들에게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재단'은 '수탁자' 및 '수탁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훈련, 고객 친절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교육 참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수탁자' 및 '수탁자의 종사자'는 이용객을 위해 단정한 품행으로 예절을 갖추어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이를 위해 '재단'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위수탁목적물을 사용·수익 등을 함에 있어 '재단' 내부 규정과 지침, '재단'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수탁자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재단' 내부 규정과 지침, '재단'의 지도·감독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이 공공목적 또는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위수탁목적물 사용 활동의 제한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안전점검 및 시설물 확인 등을 위하여 위수탁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수탁자'의 본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화재예방 등

- ①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등 소방 관계법령에 의거한 방화관리 및 소화장비를 비치·점검하여야 하고, 본 계약 특수조건상 시설물의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 내에서 화재 등 기타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재단' 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필요 시 이용객 대피 유도 등 위수탁목적물의 사용에 우선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종사자'에게 화재 및 안전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단'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재단'의 화재보험 등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위수탁목적물의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부담으로 화재보험법령상 가입의무가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완납)하고 그 증서 사본을 영업개시일 3일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수탁자'는 보험을 적절히 갱신하여 그 증서 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화재 등 안전관리 및 긴급한 사고에 대비하여 위수탁목적물 및 그 외 부속시설에 진입할 수 있는 예비열쇠 1개를 봉인하여 '재단'에 교부함으로써 '재단'이 이를 보관토록 하여야 하고, '재단'은 이를 사용한 경우 즉시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재단'은 화재 등 긴급한 경우 '수탁자'의 부재 시라도 위수탁목적물 시설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재단'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재단'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종사자' 및 방문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단'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재단'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나 위수탁목적물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리 및 개조행위를 수행한 경우, '재단'의 귀책사유 없이 위수탁목적물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로 인해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재단'과 '수탁자'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계약 범위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법령위반 또는 고의·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가 '재단'의 귀책사유 없이 DDP 내의 다른 입점업체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수탁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수탁자'의 명도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재단'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경우 '수탁자'는 '재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종료일 익일부 터 명도가 완료된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해 본 계약 만료일 전 1년 동안의 수익료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종료

- ① 위수탁기간 만료일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수탁자'의 위수탁 목적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 ② '재단'은 위수탁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해제 및 해지 요건

- ①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희망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수탁자'와 협의를 거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위수탁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해지를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해지를 할 수 없다.
- ③ '수탁자'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단'은 상당한 기간(30일 이상)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의무 이행, 위반 사항 시정, 손해 배상, 정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아래 제 7, 10, 11호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수탁목적물의 사용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수탁자'의 위수탁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련 법규정 또는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연체된 수익료의 합계가 2기분 수익료 이상이 될 경우
 4. 관리비 등 제반비용의 미지급금 합계가 3개월분 이상이 되는 경우
 5. 제3자에게 위수탁목적물을 임의로 재전대, 양도하거나 담보설정을 한 경우
 6. 본래의 사용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7. 본 계약(위·수탁운영관리계약서 및 불입서류의 위·수탁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포함)에서 약정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연간 3회 이상의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 위수탁목적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로 인하여 '수탁자'의 위수탁목적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수탁자'가 제3자와의 채권·채무관계 등 타 채무로 인하여 위수탁목적물

- 내의 시설물 및 전시물, 상품 등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경우나 행정기관의 처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당좌거래 정지, 경매,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11.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12. 계약서에서 약정한 책임과 의무의 위반, 관계법령 위반 및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13. 이전 년도와 비교하여 50%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20조 명 도

- 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내지 '재단'이 지정한 명도일까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재단'이 지정한 퇴거 예정일까지 위수탁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재단'에 명도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수탁목적물 명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단'은 '수탁자'가 제출한 명도계획서와 원상회복 소요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명도일을 지정하여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수탁기간 만료 전에 제19조 등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수탁목적물 명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단'은 '수탁자'가 제출한 명도계획서와 원상회복 소요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명도일을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가 위수탁목적물 내에 있는 '수탁자'의 소유물을 재단이 지정한 명도일까지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은 이의 반출, 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재단'은 그 반출 등의 과정에서 '수탁자'나 그 물건 등에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⑤ '수탁자'는 위·수탁에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재

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부속물의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명도 시 '재단'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⑥ '수탁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위수탁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재단'에게 명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화해조서 사본을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6개월 이내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제6항에 따라 위수탁목적물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소전화해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고권의 배제

- ①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 영업과 관련하여 계약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② '수탁자'는 '재단'이 DDP 내에서 점포개발, 장소임대 및 유사업종 영업행위 승인, 행사유치 등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프로모션 및 홍보

- ①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 및 DDP내 어울림광장에서 프로모션, 상품 등의 홍보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프로모션, 상품 등의 홍보 및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통지 등

- ① 본 계약상 요구되거나 주어지는 '재단' 또는 '수탁자'의 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협의(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 등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② '재단' 및 '수탁자'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재단' 및 '수탁자'의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수령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수탁자'는 이용객 방문 부진 등의 사유로 수익료 비율을 조정하는 계약의 변경을 '재단'에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 불가항력

- ① '재단'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 및 위수탁목적물 내에 있는 제3자가 입은 어떠한 손해 및 불편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 ② 제1항 소정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수탁자'가 '재단'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26조 기간계산 등

이 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한 기간계산 방법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조문해석

- ① 본 계약서 조문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신뢰와 공평의 원칙,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조정 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재단'의 해석과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 ② 본 계약서, '재단'의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조정 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 '재단'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하여 '재단'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28조 재판의 관할 등

위수탁계약기간 중 '재단'과 '수탁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상호 성실히 노력하되 부득이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위수탁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29조 특약, 기타 사항

- ① '재단'과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에 대해 본 계약 이후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 ② '재단'과 '수탁자'가 낙찰자 결정 이후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협의한 사항은 본 계약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 ③ 본 계약은 오직 계약당사자들의 서면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본 계약이나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구두로 변경, 포기, 취소 또는 종료될 수 없고,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만 그 변경, 포기, 취소 또는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위·수탁 운영관리계약서 특수조건

제1조 목 적

위·수탁운영관리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특수조건은 '재단'과 '수탁자' 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이하 'DDP'라 한다) 살림터 문화콘텐츠(이하 '위수탁목적물'이라 한다) 내의 시설 설치 등의 공사와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위수탁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수탁목적물을 보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사의 범위 등

- ① 위수탁목적물 내의 시설 설치 및 변경을 위한 공사의 범위는 '재단'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며, 본 공사에 따른 부대 공사(전기, 설비, 통신 등)를 포함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공사를 희망할 경우, 그 착공 전에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등)를 공사 개시 이전에 '재단'에 제출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사와 관련하여 위수탁목적물 운영 및 기타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철거 또는 이설 등이 필요한 시설물(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철거, 이설, 재설치 등 그 처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재단'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과 같이 '재단'에게 그 처리에 관해 동의를 얻은 지장물이라 하여도 그 중 '재단'의 위수탁목적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은 본래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처리 후에는 반드시 '재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수탁자'가 공사를 시작하여 그 진행 중에 현장 여건, 민원, 주변사항 등에 따라

당초 공사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게 공사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도면
3. 변경공정표

- ⑥ '재단'은 '수탁자'의 승인요청을 검토하여 공사변경 사유와 그 변경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대체장소 등을 '수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그 변경 내용을 승인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제6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수탁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단'에 수익료 감면조정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의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공사에 대한 일반사항

- ① 제2조의 설치 등 공사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및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수탁자'가 진다.
- ② 제2조에서 정한 공사 일체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공사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양질의 시공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는 공사 현장의 각종 시설물 보호 및 이용고객의 보행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칸막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공사에 따라 설치 변경되는 시설의 시설기준(마감재, 배수설비, 소방 설비, 냉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환기시설, 전기·조명설비, 위생설비 등)은 「건축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 재단의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른다.
- ④ '수탁자'는 위수탁목적물의 사인물에 대하여 DDP 디자인가이드 및 서울특별시 디자

인 기준 등 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심야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DDP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위수탁목적물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탁자'는 공사 중 해당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⑦ '수탁자'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

- ① 건축분야 시설기준은 아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수탁목적물' 내·외장 마감재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의 불연재료 내지 제11호의 준불연재료 및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래 각 호의 자재는 사용을 금한다.
 - 가. 석면 함유 제품,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환경부 고시), 기타 인체에 유해하거나 유해성 우려가 있는 제품
 - 나. 습기에 취약한 자재 및 방문객에게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자재
 - 다. 기타 DDP 및 위수탁목적물의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자재 등
 - 2. 주요 구조재는 바닥재에 고정하고 기존 시설 또는 천장부 고정을 지양한다.
 - 3. 천장재는 기존 시설 천장재 하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에 설치된 천장 소방 설비와 냉난방 급배기구의 성능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실내구조변경상의 사유로 기존 소방 설비와 냉난방 설비의 위치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변경 전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벽체 마감은 건식 공법으로 하며, 반드시 불연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벽면에 설치된 제연배기구와 소방 설비의 성능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 천장은 각종 전기, 소방, 기계, 통신 및 설비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점검구의 개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이밖에 본 계약 특수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 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등 관계법령 및 '재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통신분야 시설기준은 아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선관 및 전선은 한국공업규격(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속품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배선은 전선관 내에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케이블은 난연제품을 사용한다.
 4. 전화단자함 등은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전기분야 시설기준은 아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력증설 또는 계량기 추가설치 시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정전사고에 대비가 필요할 경우 무정전전원장치를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재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순간 정전 및 전력공급 시설의 각종 사고로 인한 고장(정전)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
 3. 전기공사기준은 IEC60364 규정에 의해 진행하여야 하며, 분전함 차단기 용량 변경 시에는 '재단'에 그 변경 2주전까지 부하계산서,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밖에 본 계약 특수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기설비 등의 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재단'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설비분야 시설기준은 아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 설치 시 반드시 전용 배기덕트(주방 후드 포함)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 시설, 냉·난방기(EHP), 공조덕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EHP) 설치 시 '수탁자'는 실내 부하량을 감안하여 반드시 사전에 '재단'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실외기는 반드시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시가스사용시설, 급·배수시설의 증설이나 계량기 추가 설치 시 '수탁자'는 반드시 사전에 '재단'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한 후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4. 옥내소화전 설치하는 기존 시설물의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위수탁목적물 내의 시설 각종 설비의 이전 또는 설치하는 아래의 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설치되거나 이전되는 설비는 모두 현재 운영 중인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어야 한다.
 - 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다.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마.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 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 아. 「소방시설법」 제3장 제2,3절 관련 규정
6. '수탁자'가 자체 설치한 주방 및 탕비실 등의 물 사용시설이 범람하여 바닥에 체수하거나 인접한 상가와 공용부의 경계선을 넘어서 누수되어 침수에 의한 시설물의 손실 또는 안전사고 또는 재산상 손실우려가 있는 사고발생 시 침수에 의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주방 및 탕비실 등의 물 사용시설을 '수탁자'가 자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수 및 배수의 수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DDP 배수계통내부에 기름기

또는 음식잔여물이 적치되어 배수계통의 설계조건에 미달하는 배수량에 이르렀을 경우 또는 현격한 배수불량현상이 발생하여 '위수탁목적물'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후속 해결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관련된 책임은 '수탁자'가 지고, '수탁자'는 수질관리에 필요한 유지방분해제투입 및 배수보조설비를 반드시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DDP에 설치된 기존의 급배기 동력장치 또는 냉난방 동력장치 외에 '수탁자'가 자체 설치하는 전기사용 급배기 동력장치 또는 전기사용 냉난방 동력장치는 그 설치 전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설치할 수 있고, '수탁자'가 이를 위반하고 허용된 전기용량을 초과하여 동력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위수탁목적물 및 DDP에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이밖에 본 계약 특수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설비분야의 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재단'의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의 착공

- ① '수탁자'는 '재단'이 제2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착공계, 공사 예정 공정표, 설계도면, 시방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등을 착공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의 감독

- ① '재단'은 시설 설치 등 공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재단'의 지도와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감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공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준공확인

- ① '수탁자'는 개관일 3일 전까지 '재단'에 준공보고서(설계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의 준공 확인 후 개관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준공확인에 필요한 현장 확인,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5조의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재단'이 시설 보완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이를 보완하고 준공확인을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

'수탁자'가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시설기준 준수 등 '수탁자'의 의무와 그 사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탁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모두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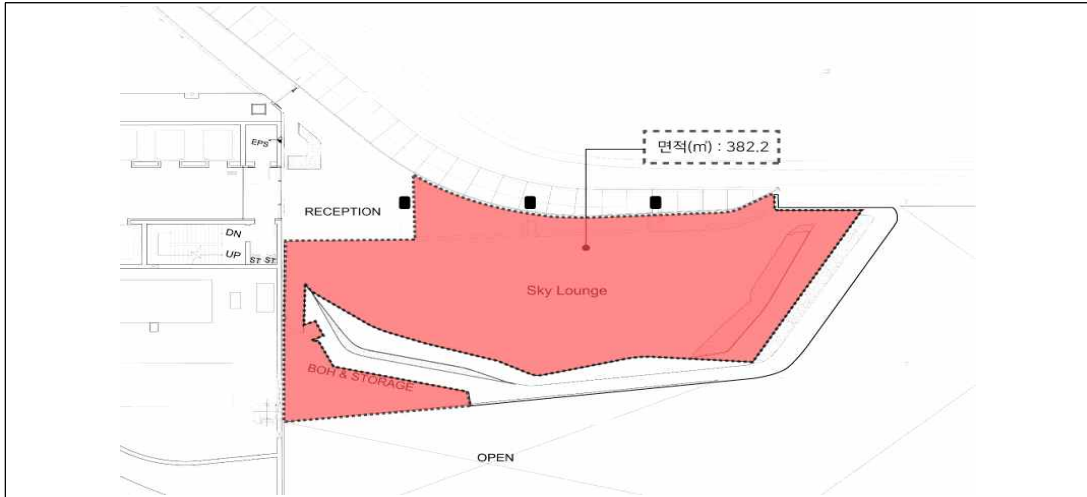
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본 계약서 규정 이외에 타 법령에 의해 '수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 특수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 일반조건, '재단'의 내부 규정 및 지침, 시설설비 및 환경기준 등을 준용하여 '재단'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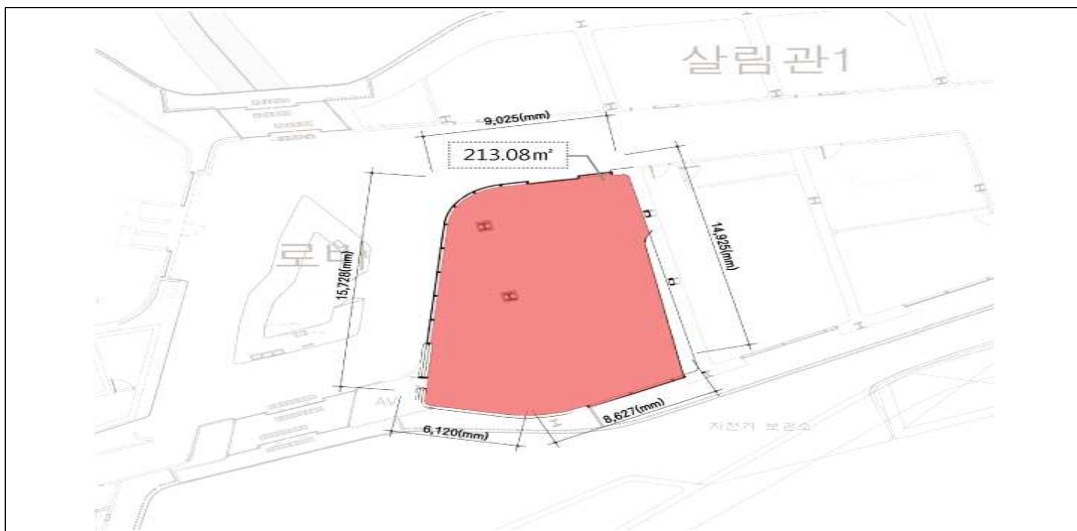
[별첨 1]

위·수탁목적물 현황

잔디사랑방



살림터 키즈존



면적

구 분	계약면적(m ²)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잔디사랑방	570	382.2	187.8
살림터 키즈존	304.40	213.08	91.32
계	874.4	595.28	279.12

[별첨 2]

수익료 납부 계좌

저희 **우리은행**은 커진 만큼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재) 서울디자인재단 DDP

임대사업운영

계좌번호 **1006-801-402253**

예금과목 **보통예금(우리뱅크통장)**

실명확인일 **14-03-14(신규발행)**

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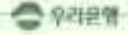

직인


서명


대한민국정부
인식제
100원
남대문서우서점
연호번호 2013년 1508





인감사용 

신고객번호 058971239

제표인신소: **서울시청지점**

발행일: **2014-03-14**

발행일: **2014-03-14**

전화: **02- 735-6747**

전화: **02- 735-6747**

(이 통장은 무지개 컬러에 12장입니다.)

표오류부 (1097)

계좌번호	IC카드	발행일	기타	계좌이체	잔액
N	N	N	N	0	0

통장일련번호 001

약관해설 안내

- ▶ 이 통장의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신학거래약관 및 해당 예금 개별약관을 적용하며, 우리 은행에 비치된 약관내용을 읽으실 또는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 가계주대리금 등 독점권리를 지급하는 예금은 대금을 받거나 출금을 할 때에는 공과금환입권설정 공적지 지하여 해당일주 안중 직발금여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비밀번호가 확인되지 못할 경우 해감이 부형 인출 할 수 있고, 근로 타인이 입사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 통장, 인감, 현금카드, IC카드,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는 경우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 신고한 서명만으로 이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비금융권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통장, 현금카드, IC카드 분실신고 : 1599-0000 / 1588-0000
 - * 신용(BC)카드 분실신고 : 1588-9988

P C 인출계좌등록 2014-03-14

텔레뱅킹/고객상담 : ☎ 1599-5000, 1588-5000(해외에서 이용시 82-2-2006-5000)

고객의 소리/접수 : ☎ 080-365-5000(밴드폰이용시 ☎ 02-2008-5000)